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2.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10호로 2024년 2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급식지원 대상의 구체화(안 제2조)
- 나.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문의 명확화(안 제2조)
- 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조제6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2) 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2. 21. ~ 2024. 1. 10.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 본문에서는 잘못 인용되었던 조례 위임 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6항’으로 수정하였으며,
- 또한 급식지원의 대상자를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구체화하면서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 같은 조 제1호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를 인용 조항으로 추가하였으며,
-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소득 분위를 기존 중위소득 “52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개정함.

○ 검토결과

- '23년 10월 국·시비 보조사업인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는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약 40명의 아동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현재 우리 구 급식아동수는 총 868명으로 꿈나무카드¹⁾ 이용 아동은 349명,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519명이 지원받고 있음.

아동급식 지원현황			
(2024. 현재 기준)			
구 분	급식업체	급식아동수	급식방법
계	5,067개소	868명	
일반음식점 등	5,049개소	349명	18개 동 꿈나무카드 가맹점
단체급식소	18개소	519명	지역아동(복지)센터

- 이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지원 대상자를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문 해석의 모호성을 줄였으며, 잘못 인용되었던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꿈나무카드)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카드사용처는 서울시 소재 신한카드사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및 편의점이며, 부적합 업종인 주점 커피전문점 등은 사용불가

참 고 자 료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